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9. 8. 23. (금) 10:00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경분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이 속 애 의원 등 31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2019년 8월 13일

○ 회부일자: 2019년 8월 14일

3. 제정이유

- 일본전범기업은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사과 및 배상을 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일본 전범기업의 행태를 명확히 인식하고자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표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교직원들의 경각심 고취를 목적으로 함

4. 주요내용

-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조례의 적용대상(안 제3조)
- 교육감의 책무(안 제4조)
-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안 제5조)
-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대한 인식표 부착(안 제6조)
- 전범기업 제품에 대한 인식 문화 조성(안 제7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고도 지금까지 이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합당한 배상을 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의 행태를 학생과 교직원들이 명확히 인식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일본 전범기업 생산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2조에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 적용 대상 기관과 제품규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대한 인식표 부착 지도를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함
-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일본 전범기업과의 거래 및 제품구매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식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에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문화조성에 노력하도록 하였음
- 최근 일본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와 백색국가에서의 제외 등 경제적 침략과 도발에 따라 국민의 반일감정이 깊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본 전범기업 생산 제품에 대한 표시를 통하여 역사의식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 충청북도교육청 전범기업 생산 제품 보유 현황

보유품목	보유수량	취득금액
디지털카메라 외	678점	7억 5,113만원

- 1) 소속기관 및 각급학교 포함
- 2) 교육청 자체 조사자료